

» 어린이용 장신구(안전요건)

항 목		허 용 치	시험방법
유해원소 용출	안티모니 (Sb)	60 mg/kg 이하	5.3
	비소 (As)	25 mg/kg 이하	
	바륨 (Ba)	1000 mg/kg 이하	
	카드뮴 (Cd)	75 mg/kg 이하	
	크로뮴 (Cr)	60 mg/kg 이하	
	납 (Pb)	90 mg/kg 이하	
	수은 (Hg)	60 mg/kg 이하	
유해원소 함유량	셀레늄 (Se)	500 mg/kg 이하	5.4
	총 납(Pb) ¹⁾	300 mg/kg 이하	
	총 카드뮴(Cd)	75 mg/kg 이하	
니켈 용출량 ²⁾		0.5 μ g/cm ² /week 이하	5.5
프탈레이트계가소제 ³⁾	DEHP	총 합 0.1 %	5.6
	DBP		
	BBP		
	DINP		
	DIDP		
	DNOP		

- (1) DEHP (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2) DBP (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3) BBP (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4) DINP (Diisononyl Phthalate,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5) DIDP (di-iso-decyl phthalate, 다이이소데실프탈레이트),
 (6) DNOP (di-n-octyl phthalate, 다이엔옥틸프탈레이트)



(예시)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한 표시

1. 품 명
 2. 모델명
 3. 재 질
 4. 제조연월
 5. 제조자명
 6.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7. 주소 및 전화번호 (국내 제조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 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8. 제조국명 (국내 제조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 무역법에 의거 표기)
 9. 사용상 주의사항
 10.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NOP, DINP 또는 DIDP가 포함된 어린이용 장신구는 제품 포장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예) "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예시) 어린이용 비비탄총

1. 모델명
2. 사용연령
3. 제조연월
4. 제조자명
5.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6. 주소 및 전화번호
7. 제조국명(국내 제조제품 생략 가능)
8. 사용상 주의사항 : 주위 글씨와 쉽게 구별되는 방법 (적색 글씨, 음양각 표시, 주위 글씨보다 훨씬 큰 글씨) 으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하여야 함

(예시) 어린이용 완구

1. 모델명
 2. 제조연월
 3. 제조자명
 4.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5. 주소 및 전화번호
 6. 안전표시(주의 경고 등)
 - 6.1 사용연령
 - 6.2 크기 및 한계 체중(승용완구, 코스튬 등)
 7. 제조국(국내 제조제품 생략 가능)
 8. 사용설명서 : 주위 글씨와 쉽게 구별되는 방법 (적색 글씨, 음양각 표시, 주위 글씨보다 훨씬 큰 글씨) 으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하여야 함
 9.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NOP, DINP 또는 DIDP가 포함된 어린이용 장신구는 제품 포장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예) "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예시) 어린이용 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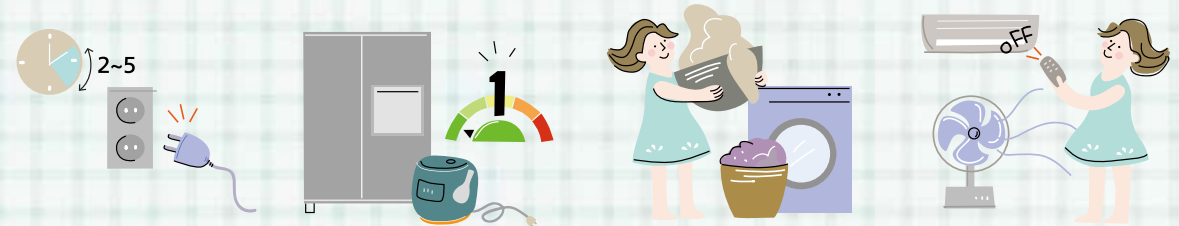
1. 모델명
 2. 재질
 3. 사용연령
 4. 제조연월
 5. 제조자명
 6.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7. 주소 및 전화번호
 8. 제조국명
 9. 사용상 주의사항
 10. 경고
- 예) 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해당제품에 한함)

(사)소비자교육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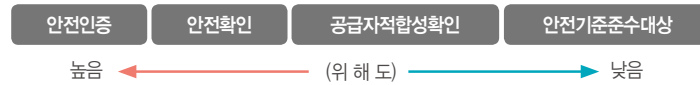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길 7
 [02]2273-2485, 6300
 E-Mail : nchc01@chol.com
 홈페이지 : www.ncce.or.kr

소비생활에서 입은 피해는 전국 어디서나 **1372**
 세탁의류심의전화 **02-2266-5870**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 마크(Korea Certification) : '09년 5개 부처 13개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하나로 국가통합인증마크

안전인증 (공장+제품검사)	안전확인 (제품검사)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검사)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
			없음	
안전인증 번호 :	신고확인증 번호 :			신고필증 번호 :

- **(안전인증)**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의 우려가 높아 생산단계부터 관리하기 위해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를 받은 후 판매

- **(안전확인)**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에 최초 수입·제조 시에 **공인기관에서 제품검사를** 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신고기관에 신고 후 판매

- **(공급자적합성확인)**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과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제품시험한 후 판매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는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 '안전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과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을 할 수 있음(법 제40조)

※ 2017.12.30. 공포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2018.7.1.부터 시행되며, 이전 제품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 : 78종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11종)

분 야	품 목 명	금 속 (1)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솔
화학 (1)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생활용품 (3)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 총 (성인용, 청소년용)		
기계 (6)	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 문 잠금장치,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29종)

분 야	품 목 명	건 축 (2)	미끄럼 방지 타일, 실내용 바닥재
섬유 (2)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화학 (3)	건전지 (망간 건전지, 알칼리·망간 전지(L)),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타이어		
기계 (7)	빙삭기,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랩처벌브,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안전회로기판		
생활용품 (15)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디지털도어록,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키용구,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휴대용 레이저용품, 승차용 안전모(승차용 눈 보호구 포함), 운동용 안전모,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수유패드, 기름난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15종)

분 야	품 목 명
공급자 적합성 확인 (15)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에 한정한다), 롤러스케이트, 바퀴달린 운동화, 모터달린 보드, 창문블라인드, 쌓여풀용 테이프, 속눈썹 열 성형기, 가(假)속눈썹, 소경카트, 휴대용 사다리,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킥보드, 자동차용 휴대용 잭, 물탱크, 폴리염화비닐관(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한다.)

●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23종)

분 야	품 목 명
안전기준 준수 (23)	가족제품, 화장비누,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은 제외한다), 간이 빨래걸이, 선글라스, 안경테, 텐트, 고령자용 신발, 고령자용 지팡이,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 위치추적기, 물안경, 반사 안전조끼, 스테인레스 수세미, 시각장애용 지팡이, 침대 매트리스, 우산 및 양산, 휴대용 경보기, 접촉성 금속 장신구, 벽지 및 종이판장지, 가정용 섬유제품, 양탄자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서울특별시

가정용섬유, 가족제품, 장신구 표시 사항

»가정용섬유제품(안전요건)

●유해물질 안전요건(가정용 섬유)

유해물질명	제품구분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및 침구류
폼알데하이드(mg/kg)		75 이하		300 이하
아릴아민 (mg/kg)			30 이하	
유기주석화합물 (mg/kg) - TBT (tributyltin)		1.0 이하		
다이메틸푸마레이트 (mg/kg)		0.1 이하		
방염제		사용하지 말것		
알러지성 염료	사용하지 말것	-	-	
pH		4.0 ~ 7.5		4.0 ~ 9.0
니켈 (Ni)의 용출량		0.5 μ g/cm ² /week 이하		

●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걸감 % - 안감 % - 충전재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 한다) 다만, 다온제품은 솜털 (다운), 깃털 (페더), 기타로 구분하여 %로 표기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점,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5. 치수 (권장사항)	6. 취급상 주의사항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가족제품(안전요건)

●유해물질 안전요건

유해물질명	제품구분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및 기타제품
폼알데하이드 (mg/kg)		75 이하	75 이하	300 이하
염소화페놀류 (PCP) (mg/kg)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6가 크로뮴 (mg/kg)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다이메틸푸마레이트 (mg/kg)			0.1 이하	
아릴아민 (mg/kg)			30 이하	
유기주석화합물 (mg/kg)	TBT (tributyltin)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니켈 (μ g/cm ² /week)			0.5 이하	

●가족제품 표시 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1. 품명	2. 재료의 종류	3. 치수	4. 제조연월
5. 제조자명	6.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7. 주소 및 전화번호 (국내 제조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8. 제조국명 (국내 제조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기)
9. 취급상 주의사항			

»접촉성 금속 장신구(안전요건) : 니켈 용출량이 0.5 μ g/cm²/week 이하

●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1. 사용연령 : 14세 이상	2. 제조연월	3. 제조자명	4.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5. 주소 및 전화번호 (국내 제조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6. 제조국명	7. 사용상 주의사항 (필요시)	

원산지표시 및 상표법 위반행위

●원산지표시위반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 위반되는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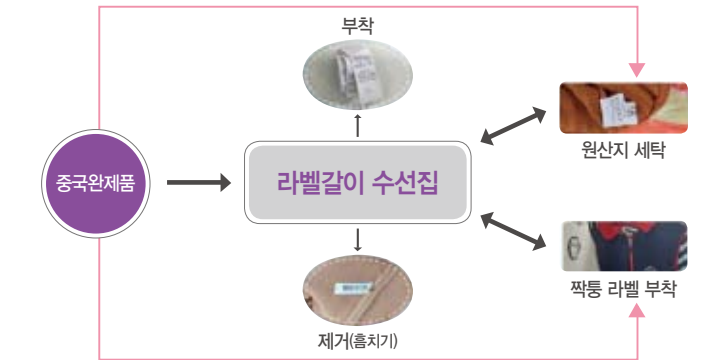
※원산지 표시위반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음)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서류보관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대외무역법 제 59조)

●상표법 위반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된 상표를 침해한 자에게는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원산지 세탁(라벨같이) 경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

●안전인증 대상 품목 : 4종

품 목 명
1.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2. 어린이 놀이기구 3.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4. 어린이용 비비탄총

●안전확인 대상 품목 : 17종

품 목 명
1. 유아용 섬유제품 2.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3.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보호 장구 및 안전모) 4.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5. 아동용 이단침대 6. 완구 7. 유아용 삼륜차 8. 유아용 의자 9. 어린이용 자전거 10.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11. 학용품 12. 보행기 13. 유모차 14. 유아용 침대 15. 어린이용 온열팩 (주머니난로 포함) 16. 유아용 캐리어 17.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제품 : 15종+기타어린이 제품

품 목 명
1. 어린이용 가족제품 2. 어린이용 면복 3. 어린이용 안경테 (선글라스를 포함한다) 4. 어린이용 물안경 5.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6.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7. 어린이용 플러스케이트 8. 어린이용 스키용구 9. 어린이용 스노보드 10. 쇼핑카드 부속품 11. 어린이용 장신구 12. 어린이용 키보드 13.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14. 어린이용 가구 15. 아동용 섬유제품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4종, 안전확인 17종, 공급자적합성확인 15종), 기타제품

»유아용 섬유제품(안전요건)

유해물질명	제품명	유아용 섬유제품
폼알데하이드(mg/kg)		20 이하
유기주석화합물(mg/kg) ¹⁾	DBT(dibutyltin)	1.0 이하
	TBT(tributyltin)	0.5 이하
아릴아민(mg/kg) ²⁾		각각 3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³⁾		0.1 이하
방염제 ⁴⁾		사용하지 말 것
다이메틸푸마레이트(mg/kg) ⁵⁾		0.1 이하
납(mg/kg) ⁶⁾		90 이하
코드 및 조임끈 ⁷⁾		적합
알러지성 염료 ⁸⁾		사용하지 말 것
pH		4.0 ~ 7.5
니켈(Ni)의 용출량		0.5 μ g/cm ² /week0이하
장식용 작은 부품[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06(완구) 제2부.4.2시험(작은 부품시험)에서 통과되는 부품]이 부착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장식용 작은 부품 안전시험(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06(완구) 제2부.4.24.6(안전시험)에 탈락되지 않을 것(이때 부착강도 기준치는 50 N±2 N). 다만 인장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KS K ISO 6330 (A세탁법)의 세탁견뢰도 시험할 경우 탈락되지 않아야 한다.

비고

-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한다. (안료와 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염료만 사용한 나염제품의 경우는 프린팅에 해당되지 않는다)
- 염색한 경우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KS K 0147, KS K 0734에 따른다.
- 코팅제, 고무,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사용한 경우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다음 표 3과 같다.
- 대상물질은 TDBPP [tri(2,3-dibromopropyl) phosphate PentaBDE[Pentabromodiphenyl ethers], OctaBDE[Octabromodiphenyl ethers]이고 방염가공처리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가죽소재가 되어 있는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 코팅, 프린팅, 단추 등 부자재를 사용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금속류의 경우는 기준치를 300 mg/kg 이하로 한다.
- 코드 및 조임끈이 있을 경우만 적용하며 EN 14682에 적합하여야 한다.
- 대상물질은 KS K 0736에 따르며 알러지 염료로 가공 처리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품을 구성하는 섬유 부위 중 충전재 및 제품 면적 대비 5% 이하인 부분은 제외하며 면적계산이 불가한 끈이나 코드 등 섬유제 부속의 경우 전체 중량의 1%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예시) 유아용 섬유제품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걸감 % - 안감 %
- 충전재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 한다) 다만, 다온제품은 솜털 (다운), 깃털 (페더), 기타로 구분하여 %로 표기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점,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5. 치수(권장사항)

6. 취급상 주의사항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8. 사용상 주의사항 : 주위 글씨와 쉽게 구별되는 방법 (적색 글씨, 음양각 표시, 주위 글씨보다 훨씬 큰 글씨) 으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하여야 함

9. 제품 사용연령
- 36개월 미만

»아동용 섬유제품(안전요건)

유해물질명	제품명	아동용 섬유제품
폼알데하이드 (mg/kg)		75 이하
아릴아민 (mg/kg) ¹⁾		3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 ²⁾		0.1 이하
유기주석화합물(mg/kg) ³⁾ - TBT (tributyltin)		1.0 이하
다이메틸푸마레이트 (mg/kg) ⁴⁾		0.1 이하
방염제 ⁵⁾		사용하지 말것
납(mg/kg) ⁶⁾		90 이하
코드 및 조임끈 ⁷⁾		적합
알러지성 염료 ⁸⁾		사용하지 말것
pH		4.0 ~ 7.5
니켈(Ni)의 용출량		0.5 μ g/cm ² /week0이하

비고

- 염색한 경우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KS K 0147, KS K 0734에 따른다.
- 코팅제, 고무,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사용한 경우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표 2와 같다.
-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한다(안료와 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염료만 사용한 나염제품의 경우는 프린팅에 해당 되지 않는다).
- 피혁 및 모피 등 가죽 소재가 되어 있는 부분만 적용한다.
- 대상물질은 TDBPP [tri(2,3-dibromopropyl) phosphate],PentaBDE[Pentabromodiphenyl ethers], OctaBDE[Octabromodiphenyl ethers]이고 방염가공처리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코팅, 프린팅, 단추 등 부자재를 사용된 부분만 적용한다. 단 금속류의 경우는 기준치를 300 mg/kg이하로 한다.
- 코드 및 조임끈이 있는 제품은 EN 14682에 적합하여야 한다.
- 대상물질은 KS K 0736에 따르고 알러지 염료로 가공 처리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품을 구성하는 섬유 부위 중 충전재 및 제품 면적 대비 5% 이하인 부분은 제외하며, 면적계산이 불가한 끈이나 코드 등 섬유제 부속의 경우 전체 중량의 1%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제품에 투입된 원부자재가 추가적인 가공 없이 최종제품에 사용되었다면 그 원부자재의 안전요건을 최종제품의 안전요건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예시)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한 표시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걸감 % - 안감 %
- 충전재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 한다) 다만, 다온제품은 솜털 (다운), 깃털 (페더), 기타로 구분하여 %로 표기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점,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5. 치수(권장사항)

6. 취급상 주의사항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8. 사용상 주의사항 : 주위 글씨와 쉽게 구별되는 방법 (적색 글씨, 음양각 표시, 주위 글씨보다 훨씬 큰 글씨) 으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하여야 함